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1. 6.



안대국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안대국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관리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운영시간 등,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행위의 제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821064

발의일자: 2021. 5. 20.

발의자: 안대국, 홍복조, 김화덕, 김태형,
원종진, 박왕규, 박정환

1. 제안이유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관리 및 위탁(안 제5조)
- 라. 운영위원회(안 제6조)
- 마. 운영시간 등,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이용료의 반환(안 제7조 ~ 안 제9조)
- 바. 자원봉사자(안 제10조)
- 사. 행위의 제한(안 제11조)
- 아. 지도점검(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
- 나. 비용추계: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란 실내놀이터, VR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달서아이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활달한 놀이활동 지원
2.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놀이시설로 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계발
3.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과 또래관계 증진 도모
4.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관련 사업

-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센터의 운영 ·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 ·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휴무일은 매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 ·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한다.

-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 조아카드 소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
망자를 접수받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
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
위

제12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

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달서아이꿈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간: 2022년부터 연중

나. 주요 내용

- 아동의 연령별 맞춤형 놀이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운영

2. 비용발생 요인

○ 달서아이꿈센터 시설 설치에 따른 기자재비 및 사무비품

○ 달서아이꿈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2년부터 추진할 사업(5년)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의 결과: 2,781,886천원

○ 설치비: 414,202천원

 - 414,202천원(기자재비 320,500천원+사무비품 등 93,702천원)

○ 인건비: 1,442,178천원

 - 2022년: 160,242천원(5,095천원×6개월×1명, 3,602×6개월×6명)

 - 2023년~2026년: 1,281,936천원(5,095천원×48개월+3,602천원×6명×48개월)

○ 부대비용: 925,506천원

 - (운영비) 2022년: 31,032천원(5,172천원×6개월)

 2023년~2026년: 248,256천원(5,172천원×48개월)

 - (공과금 등) 2022년: 33,240천원(5,540천원×6개월)

 2023년~2026년: 265,920천원(5,540천원×48개월)

 - (시설유지비 등) 2022년: 38,562천원(6,427천원×6개월)

 2023년~2026년: 308,496천원(6,427천원×48개월)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사무비품 등)	414,202	0	0	0	0	414,202
달서아이꿈센터 인건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160,242	320,484	320,484	320,484	320,484	1,442,178
달서아이꿈센터 부대비용 (운영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	102,834	205,668	205,668	205,668	205,668	925,506
재원 조달						
소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677,278	526,152	526,152	526,152	526,152	2,781,886
지방채						
기 금						
기 타 (민자 등)						

6. 작성자: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이선미